

공급업체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SK가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의 모든 시설에 소요되는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공사, 용역 및 기타 품목을 납품/제공하는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회사에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공사, 용역 및 기타 품목을 납품,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관리를 통해 공급업체의 물적·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공급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의 공개

공급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자통합구매시스템(Withus)에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

4. 공급업체 등록평가 결과 통보

공급업체 등록 평가 완료 후 15 일 이내에 합/부 판정 결과를 각 공급업체에 전자구매시스템, 서면, E-mail 또는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5. 공급업체 등록요청

- 1) 공급업체 신규 등록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구매부서에 공급업체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울산기지 및 평택기지에 공급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 SHE 관리 절차서에 따라 SHE주관부서의 SHE 등록평가(단, 기지 공정관련 공사 및 정비와 관련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한함)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불합격시에는 등록할 수 없다.
- 2) 구매부서는 공급업체 등록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급업체에 전자구매시스템 (SK Withus)가입을 요청하고 등록 평가를 진행한다.
- 3) 구매부서는 등록요청을 받은 공급업체 이외에 품목별 적정 공급업체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발굴하여 등록평가 절차를 진행 한다.

6. 공급업체의 분류

공급업체는 잠재공급업체, 조건부 공급업체, 적격공급업체로 구분한다.

6.1 잠재공급업체

적격공급업체 중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체, 제재기준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제재를 받은 후 제재기간 만료로 재사용 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잠재업체로 관리한다.

잠재공급업체는 적격 공급업체 대체 Pool 및 구매정보 문의 (RFI: Requisition for Information)의 대상으로 활용한다.

- 잠재업체를 적격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관리업무절차서 8항의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6.2 조건부 공급업체

6.2.1 조건부 공급업체 등록

공급업체 등록을 위한 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으나 회사와 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경우와,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특정업체의 입찰참여/계약체결이 불가피한 경우는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 조건부 공급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조건부 공급업체는 등록 후 정해진 횟수 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잠재업체로 전환된다.

조건부 공급업체 등록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시장독점적 업체로 대체 공급업체 발굴이 어려운 경우
- ② 공급사간 경쟁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긴급성 구매인 경우

6.2.2 조건부 공급업체의 추가 사용

조건부 공급업체를 입찰/계약체결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적격공급업체 등록에 필요한 평가 절차를 거쳐 적격공급업체로 등록 한 후

사용해야 하며, 등록자격이 미흡하여 적격공급업체 등록이 불가 할 경우 전결규정에 따라 추가 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3 조건부 공급업체의 사용제한

조건부 등록업체로 등록시에는 사용횟수 또는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등록여야하며, 사용기한이 끝나면 구매부서장에게 추가 사용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6.3 적격공급업체

공급업체 등록 평가에 합격한 업체로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이 항시 가능하다

7. 공급업체 등록 평가

7.1 공급업체 평가

- 1) 공급업체에 대해 신용, 공급실적, 기술능력(시공/제작/기술역량), 환경경영(조직/인력/신인도/경영상태), 윤리실천평가 5가지 항목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 2) 울산기지 및 평택기지의 공사/용역 (물품, 설계, 도면작성 등과 같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없는 경우 제외)관련된 도급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등록 요청전 SHE주관부서의 SHE 등록평가를 받아야하며, SHE평가결과 불합격시에는 등록할 수 없다.
- 3) 구매부서는 거래업체를 등록하는 경우 신용평가서 제출을 요청하고, 종합평가 대상일 경우 기술평가부서에 기술평가(이하 PQ)를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4) 구매부서의 기술 및 공급실적 평가 의뢰를 접수한 해당 기술평가부서는 "첨부1 공급업체 기술 및 실적평가서(양식)"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기술평가부서는전문면허 필요 유무를 필히 확인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전문면허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5) 기술평가에 합격하였으나, 신생업체로서 실적평가가 불가한 경우는 실적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 6) 해외업체 중 해당 업계의 Global Company로서 품질이 인정되는 공급업체는 기술평가부서 또는 수요부서의 확인 하에 모든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7) 기술 및 공급실적평가 완료 후 해당 평가부서는 구매부서로 평가결과 및 평가 자료를 통보한다
- 8) 평가는 종합평가(이하 PQ)로 기술평가, 경영평가(신용평가)로 구분된다
 - 종합평가(기술평가+경영평가)
 - *기지 공사/용역 관련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물품, 설계, 도면작성 등과 같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없는 경우 제외)
 - *LPG 설비/시설 및 부대시설의 제조/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 경영평가(신용평가) : 종합평가 대상 이외의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신용평가서로 같음)
- 9) 윤리실천평가는 "구매관리규정 6페이지 4.5.2 불성실업체 관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평가"로 불성실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공급업체 등록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 10) 등록 평가결과 종합평가(이하 PQ) 점수가 60점 미만 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일 경우 불합격 업체로 판정하고 거래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적격공급업체 등록기준

구분	시공/제작/실적	조직/인력	기술역량	신인도	경영상태	종합판정	윤리실천평가
시공사	20	8	37	10	25	100	불성실업체 대상제외
제조사							

주)시공실적/조직 및 인력현황/기술역량/신인도/신용평가 등 모든 평가항목이 합격기준을 충족할 시(60점 이상) "종합평가 합격"으로 "적격업체"로 판정한다.

(*) 구매관리규정 6페이지 4.5.2 불성실업체 관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평가

- 11) 공급업체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다.

공급업체 평가 필요 서류

구 분	필요 서류
공 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업체연혁/소개자료 1부
기자재	각종 품질/규격인증서 사본 1부
	주요 생산품 내역/사양서 1부
	환경경영 관련 요청자료(인증서, 외부감사결과) 사본 각1부
공사/용역	장비 및 기타 설비 보유 현황 1부
	기술인력 및 기술도입 현황(경력, 자격보유) 1부
	각종 품질/규격인증서 사본 1부
	전문면허 사본 1부
	안전환경 관련 요청자료(매뉴얼, 보건법규 위반 여부) 1부
원/부자재	생산실적(최근1년) 1부
	생산능력 증명자료 및 품질시스템이 기술된 자료 1부
	환경경영 관련 요청자료(인증서, 경영방침, 매뉴얼 등) 1부
기타품목	요청자료

주) 환경경영 관련 평가자료는 환경경영체계 평가대상 업체만 제출한다.

7.2 신용평가

- 1) 신용평가는 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신용평가회사의 종합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 한다.

(공급업체로 하여금 매년 신용평가서를 갱신하여 등록 하도록 하고, 갱신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일 경우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 2) 단,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SK그룹 계열사 및 계열사의 자회사
- ② 당사에서 투자한 회사
- ③ 공공기관(학교, 정부산하기관 등 법률에서 정한 기관)

- ④ 해외업체 및 해외업체의 지점
- ⑤ 해외업체의 Agent(외자거래 업체에 한함)
- ⑥ 조건부 공급업체
- ⑦ 기술 및 공급실적 평가 결과는 합격이나 신용평가회사의 종합신용평가 등급이 나오지 않는 업체
- ⑧ 시장독점적 업체인 경우

7.3 환경경영평가

1) 환경경영평가는 환경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 환경경영평가 대상 업체 :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50인 이상의 국내 기자재 및 원부자재 공급업체

2) 구매부서의 환경경영평가 의뢰를 접수한 환경경영평가부서는 공급업체평가 필요 서류를 참조하여 품목별 환경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결정하여 접수하고, "첨부1 공급업체 기술 및 실적 평가서_ Pre Qualification (양식)"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3) 환경경영평가 완료 후 해당 평가부서는 구매부서로 평가결과 및 평가자료를 통보한다.

8. 공급업체 정기평가

1) 구매부서장은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구매실적 평가를 주관할 책임이 있다.

- 대상업체 : 직전년도 실적 업체 전체(Withus검수완료 기준)

- 대상기간 : 직전년도 1월 1일 ~12월 31일

- 평가시기 : 매년 1월

- 평가자 : 구매담당자 및 검수자

2) 해당 평가자는 전자구매시스템(SK Withus)을 통하여 정기평가를 진행한다.

3) 평가결과 불합격(60점 미만)된 업체는 서면으로 통지(경고)하여야 한다.

4)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 할 수 있다.

제재대상행위(비윤리 행위 등) 발생한 경우 "공급업체 제재기준 관리 절차서"에 따른 제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5) 구매실적 평가는 연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6) 평가 당해연도 당사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전연도의 구매실적 평가에 의한 "적격공급업체" 또는 "잠재공급업체"로의 분류가 지속 유지되며, 신규 등록한 업체기 등록 당해연도에 등록 이후의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의 공급업체 분류가 지속 유지된다.

9. 제재 기준 및 절차는 전사통합구매시스템(withus) 에 항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재 기준은 '경고', '출입정지', '거래정지', '영구퇴출'의 4단계로 적용하며 '거래정지'의 경우 적용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하며, 출입정지는 해당근자로의 출입정지로 1개월, 6개월로 한다. 단, '출입정지'는 당사 사업장 내에 한한다. '영구퇴출'의 경우 대상 공급업체는 회사에 어떠한 형태의 제품, 공사, 용역의 공급도 불가하며 향후 공급업체로 등록할 수 없다.

10. 물적, 지적 재산권 보호

SK가스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급업체의 물적·지적 재산권

10. 제재 기준 운영 절차

10.1 제재 요청

사용부서(또는 구매부서, 기술부서)는 공급업체 제재(또는 제재 재심의) 사유 발생시, 관련 자료 및 현장확인 냉역 등 필요한 실사 결과를 업무지원그룹에 공급업체 제재(또는 제재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0.2 제재심의위원회 소집

업무지원그룹 PL(또는 팀장)은 제재(또는 제재 재심의)요청 접수 후 제재(또는 제재 재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재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10.3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 1) 위원장: 업무지원그룹 PL (또는 팀장)
- 2) 위원: 해당 구매부서장, 사용부서장,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해당 PL은 참석이 불가할 경우 PL을 대행할 담당자를 선임하여 업무지원그룹에 통보하고 대리 참석시킬 수 있다.
- 3) 간사: 업무지원그룹 공급업체 관리 담당자
- 4) 직무대행: 위원장은 본인 부재 시 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 대행을 지명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5) 제재 재심의 심의위원회는 해당업체 제재 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10.4 제재 심의 및 결정

- 1)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출석으로 성립한다.
- 2) 제재 수위는 5항 제재 기준 및 일반사항과 아래 10.6의 제재기준에 따른다.
- 3)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은 위원간 토의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하며, 동률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4) 제재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임직원(공급업체 포함)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0.5 제재 품의 및 통보

업무지원그룹은 제재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심의결과서에 작성하고, 공급업체 제재 품의서에 첨부하여 기업문화실장의 품의를 득한 후 제재사항을 관련 부서 및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전자구매시스템(SK witus)내 공급업체 관련 정보를 수정한다.

10.6 제재기준

과정별 분류	과정별 주요 제재 대상 행위	적용대상	제재기준
--------	-----------------	------	------

전과정 (공정/투명 거래 준수 위반업체)	<p>◎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SK가스 임직원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SK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한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향응, 접대 행위 ✓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부채의 탕감 또는 제 3 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 행위 ✓ 퇴직 후 고용/취업안선, 거래계약 체결 등의 장래를 보장하는 약속 등 	공통	영구퇴출
	<p>◎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금전 대차, 대출보증 등의 금전거래 행위 및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한 업체</p>	공통	영구퇴출
	<p>◎ 거래관계에서 알게된 기술자료, 경영정보등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무단 유출한 업체</p>	공통	거래정지 3년이하
	<p>◎ 타 사업자와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업체</p>	공통	거래정지 2년이하
	<p>◎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임을 사전에 밝히지 않은 업체</p>	공통	거래정지 2년이하
입찰 진행 또는 계약자 선정 과정	<p>◎ 경쟁업체 또는 SK가스, SK계열회사에 대해 약의성 투서 또는 유언비어 유포 업체</p>	공통	거래정지 3년이하
	<p>◎ 입찰 대상으로 선정된 후 입찰지명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2회이상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 (단, 정당한 사유의 입찰포기의사 전달시 또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입찰은 예외)</p>	공통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입찰 자격 요건 및 관련 면허 등 제반사항이 타사 명의 도용 또는 부당한 사용, 허위로 판명된 업체 	공통	거래정지 2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㉕ 동종, 경쟁업체와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공통	거래정지 2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㉖ 입찰에 응찰 후 타사의 낙찰을 위해 고의로 불합격한 업체 	공통	거래정지 2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㉗ 입찰, 협상관련 업무 방해 (경쟁사의 입찰/협상 참가 방해, 입찰/협상 진행 방해) 	공통	거래정지 1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㉘ SK가스 내부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한 부정당한 입찰 참여 청탁 업체 	공통	거래정지 1년이하
계약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㉙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에 불응한업체 	공통	거래정지 3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㉚ 입찰 진행 과정 또는 사전협의를 따라 결정된 사항을 번복/재론하는 업체 	공통	거래정지 2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㉛ 계약 체결과 관련 고의로 중요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공통	거래정지 1년이하
제품/용역 공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㉜ 입찰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력 및 자재 또는 장비를 공급하지 않은 업체 	공사/용역	거래정지 1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Service인력을 교체 또는 공급하지 않은 업체 	부재료	거래정지 1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지연한 업체 (납득 가능한 지연 사항 사전 통보 및 공정조업에 영향이 없는 경우 제외) 	기자재 부재료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자의 작업지시 불응 또는 태만한 업무처리로 품질, 공사기간에 영향을 끼친 업체 	공사/용역	거래정지 1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 납품 요구 불응 업체 	기자재 부재료	거래정지 3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계약 제품의 경우 계약 기간내 계약 규격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 (부재료는 공정 운전에 영향이 없을 경우 특채하여 사용하며 향후 계약 규격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부재료 기자재	거래정지 1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한 용역/제품의 중대한 품질 결함이나 규정/절차 위반 및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업체 	공통	거래정지 3년이하
계약사항 이행 및 준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하도급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조건 및 이행을 불성실히 수행한 업체 	공통	거래정지 2년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업체 	공통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공통	거래정지 1년이하
공급업체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평가 결과 불합격을 받은 업체 	공사/용역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평가 결과 불합격을 받은 업체 - 60점 미만 업체 및 불성실한 거래 행위로 불합격 받은 업체 	공사/용역	경고
공급업체 경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부도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업체 	공통	영구퇴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3년이하간 '거래정지 1년이하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은 불성실한 업체 	공통	영구퇴출

	◎ 종업원 또는 일용직 임금 3개월 이상 체불 업체	공통	경고
공급업체 SHE 책임 경영	◎ 사업장 내 SK가스 Safety Golden Rules(이하 SGRs_필수안전수칙)의 규정위반 업체 및 근로자	공사/용역	공급업체 SHE 책임경영 적용기준 4항 준용
	◎ 사업장 내 사망사고의 직접원인이 규정위반, 법률위반이고,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공통	영구퇴출
	◎ 사업장 내 사망사고의 직접원인이 규정위반, 법률위반이고,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업체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공통	거래금액 쿼터제

● **공급업체 SHE 책임경영 적용기준**

1. 영구퇴출 or 거래금액 쿼터제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 거래금액 쿼터제
 - 1) 객관적으로 해당 BP 수행업무가 대체 불가능
 - 2) 사실상 또는 현실적으로 대체 거래 BP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
→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기 2개 조건 검토 후, 거래금액 쿼터제를 선택해

야 하고,

그 사유를 제재심의결과서에 반드시 포함

[적용가이드] 쿼터제 적용 기준_(총 거래금액'에 대해 제한을 두는 제도)

- > 사망사고 직전 3개년 총 평균 거래금액 기준 下,
향후 3개년 연평균 총 거래금액을 최대 80%로 제한
- > 쿼터제 적용기간 중 추가 제재조치 필요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통해 영구퇴출 또는 총 거래제한 금액 20%
추가삭감 (최대 60%) 및 쿼터기한 신규 3년 연장